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5. 28 선고 2019가단333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원고 사이에 2016. 1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6. 11. 14. 접수 제14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5. 8. 5.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8. 8. 5., 약정이율 기준금리 + 연 2.95%,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는 일반대출을 받았고, 2019. 8. 6. 이자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9. 10. 15. 현재 원고에 대하여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443,079원의 채무가 있다.

나. D는 2016. 11. 14.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48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개별공사지가 기준 시가 17,449,250원(3500원 × 9971㎡ × 1/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② E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9908호 유류대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22,834,292원, ③ 유한회사 F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 5,000만 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3154호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위 채권은 2013. 11. 23.부터 2014. 8. 23.까지 발생한 유류대금채권이다)이 있음에 반하여, 소극재산으로는 ① G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액 252,268,000원, ② H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액 61,926,000원, ③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44,286,000원, ④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50,000원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증여당시 J 대표이사 K에게 2억 3,000만 원의 유류대금 채권과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2016. 11.부터 2018. 8. 27. 까지 L에 대한 16,182,050원의 유류대금 채권, 2017. 1.부터 2019. 6. 12.까지 M에 대한 35,235,000원의 유류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게 당시 K에 대하여 유류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8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D의 L에 대한 채권이나 M에 대한 채권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D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D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부친이자 피고의 외할아버지 N와 N의 4촌인 O가 1977. 6. 1. 종산으로 사용하려고 1/2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N의 부모와 O의 부모의 각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N가 유혼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묘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피고가 2015년경 서천으로 이사하게 되자, N의 유혼에 따라 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D가 모자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증여 당시 및 이후 D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목 록

충남 서천군 P 임야 9971㎡ 끝.